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공적자금 투입 조건을 완화하는 ‘금융기능강화법’ 개정안 상정

□ 일본 정부는 공적자금의 투입을 개선하는 내용의 ‘금융기능강화법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.

-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투입 요청 기한을 2008년 3월말에서 2012년 3월말까지로 연장하고,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을 신청할 때 경영책임과 조직개편 이행을 요구하는 기존 규정을 완화함.
- 자기자본 비율이 지방 금융기관 건전성 기준인 4% 이하라도 중소기업 대출 지원책에 따라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 금융기관들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도 면책받을 수 있게 됨.
- 또한 개정안은 기존 신용금고, 중앙금고, 신용협동조합연합회 뿐 아니라 노동금고연합회, 농림중앙금고에도 공적자금 투입을 가능하게 하여, 관련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및 재무구조 건전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됨.
-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 금융기관들이 경영위기에 빠지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임.

□ 한편, 이번 금융기능강화법 개정안은 경영상에 문제가 있는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음.

- 기존 금융기능강화법에서는 공적자금 요청 시 엄격한 경영책임과 정리해고의 이행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활용실적은 2건(합계 400억엔)에 불과했음.
- 조건이 완화되면 요청 건수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문제가 되는 금융기관의 경영개선이 진행되지 않은 채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우려됨.
- 아울러 경영을 악화시킨 경영진의 책임조차 추궁하지 않고 국민 세금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.

(로이터 10/24,
마이니치신문 10/21,
요미우리신문 10/21)